

의 안 번 호	2038	【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제 출 일 자: 2022. 12. 2.(금)
- 제 출 자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: 2022. 12. 9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: 2022. 12. 20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물가, 인건비, 유지관리비 상승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안전점검수수료 변경(안 별표4)
-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다. 근거법규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0조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하성천)

-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따른 안전점검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.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1. 6. 10.] [법률 제17379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9조(광고물등의 안전점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(제3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·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(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)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 3. 29.]

제10조(위반 등에 대한 조치) ① 시장등(제3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·금지·제한 등에 관한 제3조, 제3조의2, 제4조, 제4조의2, 제4조의3,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관리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1.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
2.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
3. 광고주
4. 옥외광고사업자
5. 광고물등의 표시·설치를 승낙한 토지·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

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라 한다)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의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6.>

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「전기통신사업 법」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6. 1. 6.>

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6.>

⑥ 시장등은 입간판·현수막·벽보·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⑦ 시·도지사는 제3조, 제4조, 제4조의2, 제4조의3,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)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. 6.>

⑧ 시·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1. 6.>

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·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. 6.>

[전문개정 2011. 3. 29.]

[제목개정 2016. 1. 6.]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22. 12. 6.] [대통령령 제33021호, 2022. 12. 6., 일부개정]

제38조(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)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
1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
 2.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 3. 건축·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-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,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, 검사요령,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한다.